

중개형ISA 요약설명서

1 ISA 제도와 특징

ISA유형(유사ISA상품과 구별되는 특징)

중개형 ISA	신탁형 ISA	일임형 ISA
위탁매매계좌 형태로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	특전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 운용 지시대로 운용	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운용

-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으로 구분되며, 3가지 계약 형태 중 한가지만 가입 가능합니다.
-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오니, 가입하시기 전 ISA 계약 유형과 특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중개형ISA 가입대상, 납입한도 및 의무가입 기간

가입대상	☐ 가입대상 1.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19세 이상인자 2. 15세 이상~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(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 ※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
납입한도 및 의무가입 기간	☐ 납입한도 :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한도 1억원까지 불입 가능 $2\text{천만원} \times [1 + \text{가입 후 경과한 연수}(\text{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})]$ - ISA 연간 한도는 2천만원이며,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-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·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 ☐ 의무가입기간 -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 - 3년 의무보유기간 이후 연장 계약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해지해도 해지일까지 세제혜택 부여 ※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

중개형ISA 가입필요 서류 요건

구분	19세 이상 거주자		15~19세 미만 거주자		농어민
	일반형	서민형	일반형	서민형	
대상	-	근로소득 5,000만원·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	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자	근로소득 5,000만원·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	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
	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				
가입서류	실명확인증표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	농어업인확인서 +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
비과세한도	200만원	400만원	200만원	400만원	400만원
만기	개별 계약에 따름				
의무 보유기간	3년				

2 만기 및 계약 해지

- 만기연장: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연장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만기해지 프로세스를 따릅니다. 이후 환매/매도되지 않은 재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- 만기해지: 계약만기에 따른 해지 시 세제혜택은 상품별 환매/매도 종료일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(30일) 중 빠른날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부여됩니다. 이후 유지되는 자산은 환매/매도 시점에 일반과세 적용됩니다.

3 중도해지 관련

- 의무가입기간 이전의 해지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.
-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.
 -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(판매보수 등)는 별도로 부과합니다.
 -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상품별 약관의 별첨 참고 바랍니다.

4 예금자보호 여부

이 금융상품(중개형 ISA)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 (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5 유의사항 안내

- **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**
-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(예상 세액 제외)에서 가능하나,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원상회복되지 않습니다.
- 중도인출 시점에 보유자산 별 보수나 수수료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통보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, 세제혜택이 소멸되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.
- 만기 연장 시 연장일 직전년도 소득에 따라 가입유형을 재확인합니다. 가입유형(일반형/서민형/농어민)이 변경되는 경우, 세제혜택 한도가 변경된 유형으로 전 기간 적용되므로,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는 불가하며, 유상청약의 경우 계좌 내 금전으로만 청약 가능합니다.
- 이 계좌는 계좌 만기일부터 입금, 계좌이전, 청약, 매수가 불가합니다.
-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배당소득·이자소득 이외에 역외 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6 투자위험등급

-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 부터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- 중개형ISA는 고객 운용지시에 따라 편입되는 상품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투자위험이 정해집니다.

7 민원처리,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, 상담센터(1588-0365) 및 당사 홈페이지(www.shinhansec.com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1항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상품개발 담당부서: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(☎1588-0365)

[주의]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중개형ISA 핵심상품설명서

중개형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)는 계약 체결 전 계약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, 운용 자산의 수익구조, 손실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다음 고객님의 판단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중개형ISA는 계좌 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·편입할 수 있으며, 운용자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반드시 개별 운용자산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 중개형ISA 개요

구 분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도 개요	□ 개인형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)란 1개의 계좌 안에서 예적금 / 국내주식 / 채권 / ETF, ETN / 리츠 / 펀드/ 공모형 파생결합증권 / RP거래가 가능하며,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함 ISA의 유형은 중개형 / 신탁형 / 일임형이 있으며, 전체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만 1인 1계좌 개설 가능 ※ 중개형ISA의 경우 예금, 사모 상품, 금, 해외주식, 외화로 투자하는 상품 불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입대상	□ 가입대상 1.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19세 이상인자 2. 15세 이상~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(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 ※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입한도 및 의무가입 기간	□ 납입한도 :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한도 1억원까지 불입 가능 2천만원 ×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(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4년)] - ISA 연간 한도는 2천만원이며,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-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·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 □ 의무가입기간 -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 - 3년 의무보유기간 이후 연장 계약의 만기일까지 언제든지 해지해도 해지일까지 세제혜택 부여 ※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 하는 세액 추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확인서류	□ 가입대상별 자격증빙 확인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19세 이상 거주자</th><th colspan="2">15세~19세 미만 거주자</th><th rowspan="2">농어민</th></tr><tr><th>일반형</th><th>서민형</th><th>일반형</th><th>서민형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대상</td><td>-</td><td>근로소득 5천만원·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</td><td>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</td><td>근로소득 5천만원·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</td><td>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가입일 또는연장일이 속한과세기간 직전3개과세기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</td></tr><tr><td>가입 서류</td><td>실명확인증표</td><td>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</td><td colspan="2"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</td><td>농어업인확인서+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</td></tr><tr><td>비과세 한도</td><td>2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td>2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td>400만원</td></tr><tr><td>만기</td><td colspan="5">개별 계약에 따름</td></tr><tr><td>의무 보유기간</td><td colspan="5">3년</td></tr></table>	구분	19세 이상 거주자		15세~19세 미만 거주자		농어민	일반형	서민형	일반형	서민형	대상	-	근로소득 5천만원·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	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 5천만원·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	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	가입일 또는연장일이 속한과세기간 직전3개과세기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					가입 서류	실명확인증표	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	농어업인확인서+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비과세 한도	200만원	400만원	200만원	400만원	400만원	만기	개별 계약에 따름					의무 보유기간	3년				
	구분		19세 이상 거주자		15세~19세 미만 거주자			농어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반형	서민형	일반형	서민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상	-	근로소득 5천만원·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	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 5천만원·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	종합소득 3.8천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가입일 또는연장일이 속한과세기간 직전3개과세기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가입 서류	실명확인증표	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	농어업인확인서+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과세 한도	200만원	400만원	200만원	400만원	4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만기	개별 계약에 따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무 보유기간	3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단, 가입신청일 또는 연장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,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가입요건을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중도인출	□ 만기 이전에 납입 원금 합계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, 인출 시 횟수 제한 없음. ※ 단, 중도인출 시점에 보유자산 별 보수나 수수료징수가 발생할 수 있음 □ 중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원상회복 되지 않음 □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의 계약이 해지되고,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을 추징														
과세특례 및 손익통산	□ 과세특례: 계좌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- 200만원(서민형, 농어민은 400만원)까지 비과세 - 200만원(서민형, 농어민은 400만원) 초과 순소득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 □ 계좌 만기일로부터(해지일 아님 유의) 60일 이내 만기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이 전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-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연금 세액공제 한도: 연금저축 600만원(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) 추가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 □ 손익통산: 각 금융상품 과표를 계좌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04 745 1465 1245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손익통산 허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상장 주식, 상장 리츠</td><td>양도차손, 배당</td></tr> <tr> <td>국내상장 ETF/ETN</td><td>Min(과표차익차손, 매매차익차손) 단,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 제외</td></tr> <tr> <td>공모 원화 펀드</td><td>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(과세손익)</td></tr> <tr> <td>공모 원화 E/DLS, E/DLB</td><td>배당손익(실질소득)</td></tr> <tr> <td>원화 RP</td><td>이자소득(실질소득)</td></tr> <tr> <td>공모 원화 채권</td><td>이자소득(매매손익 통산 제외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 손익통산 시 과세대상이 큰 순서대로 비과세 → 분리과세 처리 ※ 의무보유기간(3년) 내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 미적용 (예외) 1) 특별해지 사유 2) 납입원금 이내의 인출	구분	손익통산 허용	국내상장 주식, 상장 리츠	양도차손, 배당	국내상장 ETF/ETN	Min(과표차익차손, 매매차익차손) 단,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 제외	공모 원화 펀드	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(과세손익)	공모 원화 E/DLS, E/DLB	배당손익(실질소득)	원화 RP	이자소득(실질소득)	공모 원화 채권	이자소득(매매손익 통산 제외)
구분	손익통산 허용														
국내상장 주식, 상장 리츠	양도차손, 배당														
국내상장 ETF/ETN	Min(과표차익차손, 매매차익차손) 단,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 제외														
공모 원화 펀드	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(과세손익)														
공모 원화 E/DLS, E/DLB	배당손익(실질소득)														
원화 RP	이자소득(실질소득)														
공모 원화 채권	이자소득(매매손익 통산 제외)														
만기 및 계약해지	□ 만기연장 - 만기연장기간: 만기 3개월 전 부터 만기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(만기일이 공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익 영업일 적용) - 만기 연장 시작일: 만기연장 신청일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 -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, 일반형 비과세 혜택 200만원 전기간 적용 -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,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,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 추징 ※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, 만기해지 프로세스를 따름 □ 만기 해지 - 계약만기에 따른 해지 시 세제혜택은 상품별 환매/매도 종료일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(30일) 중 빠른날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부여됨. 이후 유지되는 자산은 환매/매도 시점에 일반과세 적용 ※ 일부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부되는 상품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※ 만기 대금지급은 만기일이 아닌, 계좌 내 자산이 모두 환매·매도 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 □ 중도해지 - 의무가입기간 이전의 해지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 (지방소득세포함)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 -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 - 단, 의무보유기간 3년 이후 연장계약의 잔존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 까지 세제혜택 부여														

만기 및 계약해지	☐ 특별중도해지 - 아래의 이유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 시,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-사유: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 등
부적격 통보	☐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검증 결과를 통보 (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③에 의거) ☐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적격 통보 받을 경우, 고객 고지 후 일반형으로 전환되며 세제혜택 한도가 변경된 유형으로 전기간 적용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등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, 입금 등 일부 거래에 제한이 있으며,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 이의제기 신청 가능. 이후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신규 가입자의 세제혜택이 소멸되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고 일반과세 전환
계좌이전	☐ 계좌이전: 기존 가입 계좌에서 타사 또는 다른 유형의 ISA로의 이전을 하는 경우,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이전 가능 - 계좌이전을 통하는 경우 비과세·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 유지 -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 ☐ 계좌이전 방식: 금융회사 간 이전 / 금융기관 내 유형별 이전 - 금융회사 간 이전 시 중개형 / 신탁형 / 일임형 자유롭게 선택 가능 - 동일 금융기관 내 유형별 이전도 허용(당사 내 이전은 신탁형 / 일임형 → 중개형만 가능) ☐ 현금이전 원칙 - 모든 편입자산의 환매 및 현금화 후 이전 - 일부 금액만의 이전은 불가
수수료	☐ 가입/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-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(판매보수 등)는 별도로 부과 -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상품별 약관 별첨 참고
가입방법	☐ 대면: 지점 창구 / 비대면: 모바일

2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
구 분	주요내용
유의사항	☐ 이 금융상품(중개형 ISA)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☐ 중개형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. ☐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☐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 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☐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☐ 배당소득·이자소득 이외에 역외 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안내사항	☐ 청약은 ISA 납입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 ☐ 레버리지 (ETF / ETN, 코넥스 상장주식)투자 시 기본예탁금 거치의무가 있습니다. ☐ 편입상품별 보수 및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. ☐ 편입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,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☐ 중도인출은 내방/유선/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중도인출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. ☐ 중도해지는 내방/유선/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주식·금융상품 존재 시 중도해지 불가합니다. 단,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에 동의 할 경우, 과세처리 후 해지 가능합니다.

안내사항	- 의무가입기간(3년) 경과 전: 감면세액 추징 - 의무가입기간(3년) 경과 후: 감면세액 미 추징 □ 특별해지는 내방만 가능합니다. 이때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권리관련 사항	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료열람요구권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,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 ③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① 금융소비자는 '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'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"1년" 이내의 기간에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 부터 "5년" 이내)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② 대상상품: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③ 진행절차 -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- 회사는 "10일"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(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) 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 ※ 주의사항 :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.

민원처리,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, 상담센터(1588-0365) 및 당사 홈페이지(www.shinhansec.com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상품개발 담당부서: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(☎1588-0365)

"본 설명서에서 사용된 금융용어 중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
우측 QR 코드를 찍으세요. 금융감독원 FINE에서 제공하는
금융용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"



※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